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97
----------	-------

발의연월일 : 2026. 7. 30.

발 의 자 : 곽규택 · 조승환 · 박지원
김용태 · 유상범 · 신성범
김상훈 · 강대식 · 강승규
배준영 · 조지연 · 강명구
서천호 · 최은석 · 서범수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 의무를 규정하면서 신청 가구 수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지역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도시가스 공급의 경제성이 낮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법률 제 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 중 “제19조”를 “제19조제3항”으로, “해당하여”를 “해당하거나 인구감소지역(「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에 해당하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제19조</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여</u>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 ----- <u>제19조 제3항</u> ----- ----- <u>해당하거나 인구감소지역(「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u> <u>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u> 에 <u>해당하여</u> ----- ----- ----- -----.